

인권정보자료실
CPb1.94

세계로부터 배우는 진상규명과 화해, 그리고 인권

-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 파즐 란테라 위원 초청 워크숍 -

2001. 3.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정보자료실
CPb1.94

세계로부터 배우는 진상규명과 화해, 그리고 인권

-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 파즐 란데라 위원 초청 워크숍 -

2001. 3.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목 차

I. 파즐 란데라 위원 방한 일정	3
II. 파즐 란데라 위원 인적사항	4
III. 남아프리카공화국 개황	14
IV.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요약	21
V. 위원회 내부 세미나 자료	36
1. 남아공 사회의 인종차별적 지배구조	36
2. 흑인들에 대한 백인정권의 폭력적 학살	43
3. 남아공의 대표적인 인종차별법과 국제적 압력	48
4. 인종해방운동 주체들의 정치적 동맹	52
5. ANC정권의 국가발전계획	69
6. 남아공 (준)공무원들의 고용불안	74
7. ANC정권의 “성장·고용 그리고 재분배 전략”	80
8. 남아공의 선거제도와 의회의 구성	86

파즐 라데데라 위원 방한 일정

시간/날짜	3월 27일 (화)	3월 28일 (수)	3월 29일 (목)	3월 30일 (금)	3월 31일 (토)	4월 1일 (일)			
06:00 - 07:00	도착 및 휴식	조찬 (사무국)	조찬 (자문위원)	조찬 (위원장)	제주도착	*4.3지원단 주관 서울도착 4.3관련행사참석			
07:00 - 08:00									
08:00 - 09:00									
09:00 - 10:00									
10:00 - 11:00							세션 1 <진실규명과 화해를 통한 과거청산: TRC 활동과 성과>	세션 4 <진실규명을 위한 의료민들의 역할>	* NGO주관 국회방문
11:00 -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 NGO주관 점심식사
12:00 - 13:00							세션 2 <조사지원활동에 대하여>	* NGO주관 <과거청산의 방향>	세션 5 <진실규명 이후 나아가야할 길>
13:00 - 14:00									
14:00 - 15:00							세션 3 <위원들과 간담회>	*NGO주관 서울역 캠페인 참석	세션 6 <보고서팀과 함께>
15:00 - 16:00									
16:00 - 17:00	환영만찬	만찬	* NGO주관 만찬	만찬	* 4.3지원단 주관 4.3유족단체 와의 만남				
17:00 - 18:00									
18:00 - 19:00									
19:00 - 20:00									
20:00 - 21:00	출국								
21:00 - 22:00									

파젤 란데라 박사 이력서



Dr Fazel Randera

1. 일반사항

성 명 : 모하메드 파젤 란데라 (Mohamed Fazel Randera)
주 소 : 33, Escombe Ave. PARKTOWN WEST
JOHANNESBURG, 2193
생년월일 : 1948. 11. 19. (52세)
출 생 지 : 남아프리카 Potchestroom
국 적 : 남아프리카
가 족 : 부인 헬렌 리스 (Helen Rees)와의 사이에 3자녀:
유수프 란데라 리스 (17세)
사미르 란데라 리스 (13세)
사피야 란데라 리스 (11세)
언 어 : 영어, 아프리카스(남아공 공용어), 구자라트(인도서부)어

2. 학 력

대 학 교 : 영국 런던 대학교 GUY'S HOSPITAL
1969년에 입학 1976년에 졸업
자격증 취득: MRCS. LRCP (런던) 1976
(註: MRCS=Royal College 외과의사 자격)
대 학 원 :
1981-1982 영국 Royal College 산부인과 학사학위 취득
1981-1983 영국 Guy's Hospital 일반 의료과에서 대학원 직업
훈련과정 수료
1986-1987 Witwatersrand 대학교에서 직업병 연구과정 졸업
1992-1994 Witwatersrand 대학교에서 가정의학 석사학위
1999-2000 남아프리카 의료협회와 Manchester 대학교 경영
대학원에서 MINI MBA (경영관리학 석사) 취득

3. 경력 (요약)

- 1983 1976년부터 영국에서 의료활동을 하다가 17년 만에 남아프리카로 귀국
- 1983-1985 Soweto 지역 진료소 산과학 (조산술) 수석의료관
- 1985-1987 요하네스버그 소재 국립 직업보건 센터 수석의료관
- 1987-1989 요하네스버그 Witwatersrand 대학교 알렉산드라 보건 센터 및 대학 진료소의 부소장 겸 의료국장
- 1989-1995 요하네스버그 Mayfair 보건센터 가정의(家庭醫)
- 1993-1994 국제HIV/AIDS 임상실험 현지 수석 조사관으로 2차례 참가 (註: HIV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 1989-1995 Witwatersrand 대학교 가정의학과 명예교수
- 1995-1998 케이프 타운 소재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Gauteng 사무소 소장
1998. 1-10 Gauteng 주지사 소속 Gauteng병원 조사위원회 위원
1998. 10-현재 요하네스버그 Kenridge 병원 원장.
세계 보건기구의 국제 담배산업 조사 4인 전문위원회 위원.
남아프리카 의료협회 윤리-인권-법률위원회 위원장.
남아프리카 윤리연구소 소장.
남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이사.
남아프리카 완화제 연구소 후원자.
보건전문인협회의 소속 윤리 인권위원회 위원.
남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임원.
남아프리카 관용(寬容)교육 재단 임원.
남아프리카 의료협회 임원.
세계의학협회의 임원.
국무총리 소속 전국교정기관자문위원회 임원.
NEHAWU 투자회사 (노동조합 투자회사) 이사.
보건의료재정지원이사회 이사.
Netcare (註: 여행자를 위한 아프리카 최대 진료 기구) 위원.
세계의학협회의 소속 윤리위원회 위원.

4. 현재 회원자격을 가진 전문기구

- * 남아프리카 보건전문인협회의
- * 영국 일반의료 회의
- * 남아프리카 의료협회
- * 가정의(家庭醫) 학회
- * 남아프리카 가족계획 협회

5. 서훈 및 수상

1996 Kaiser 재단 넬슨 만델라 보건 인권상 수상

6. 전문의(專門醫)로서의 경력

란데라 박사는 의사로서 전문 기관에 근무하고 환자 치료에 관한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특히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광범위한 인권 및 윤리 문제에 관여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임무가 끝난 후 란데라 박사는 반나절만 일반의(一般醫)로서 진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문 기관들에서 봉사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윤리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들은 특히 HIV/AIDS와 임신중절 및 안락사 같은, 일반 개업의들에게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의사가 지켜야 할 일련의 규범을 공식화하고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활동의 중대한 영역에는 과거에 조성된 보건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문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지사 소속 Gauteng 병원 조사위원회>는 환자들의 시각과 보건 전문가들의 견지에서 본 국립병원 체제의 장점과 약점에 관한 매우 귀중한 식견을 제시했다. 란데라 박사는 의료진의 통합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던 의료진이 통합되었고 성실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보다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이 협상에는 의료진들이 분리되어 흔히 구분되는 부분에서 야기되었던 감정과 우려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Nehawu 투자회사와 보건의료 재단 이사회의 활동이 앞으로 남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편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해 주었다. 이 기간 동안에 행한 일상적인 진료행위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평성을 도모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또한 의학 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1995-1998)

1995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란데라 박사를 17명으로 구성된 <진실과 화해위원회> (TRC) 위원으로 임명했다. 동시에 란데라 박사는 Gauteng TRC 사무소 소장 겸 소집책으로 임명되었다. Gauteng 사무소는 Gauteng, Northern Province, Mpumalanga, North West 주에서 청문회를 열고 조사활동을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란데라 박사는 또한 인종차별정책을 쓰던 기간에 의료인들이 한 행위와 기업부문의 경영 행태에 대한 TRC 청문회 개최자로 임명되었다. 란데라 박사에게는 위원으로서 하는 정상적인 일 이외에 Gauteng 사무소를 발전시키고 운영할 임무도 있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운영진과 직원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사무소 직원은 모두 180명이었고 1년 예산은 약 10,000,000 랜드(rand. 註: \$1=R7.75)였다. 이 사무소의 직원은 위원들을 비롯하여 연구원, 언론담당자, 보급 전문가, 데이터 관리자, 행정관 및 사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근 직원들 외에 Gauteng 인근지역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고용하여 교육을 한 후 필요한 곳에 배치했다. 란데라 박사는 지역 책임자로서의 임무 이외에, TRC의 전국 홍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으며 재정 및 전략계획 위원회에서도 일을 했다. 대통령에 보고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요하네스버그 Mayfair 보건센터 의사 (1989-1994)

란데라 박사는 매우 다양한 그룹의 환자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과 건강문제를 돌보는 一般醫로서 일을 했다. 이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헌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보험이 없이 귀국하는 망명자들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진료해 주었다. 이와 같은 진료행위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안식처(Safe Haven)로 매우 일찍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란데라 박사는 또한 두 갈래로 유입되는 국제적인 약품 유통 경로를 밝혀내는 현지 수석 조사관이었다. 나중에 그 약이 HIV/AIDS 환자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치료약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란데라 박사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과 기관들에 의료 지원과 조언을 해 주었다.

- * <여성 학대에 반대하는 사람들> (POWA): 매맞고 학대받는 여성들과 강간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

- * <Streetwise>: 가출한 아이들을 돌보는 단체

- * 남아프리카 지역 인도 영사관 및 대사관

다음과 같은 국제 기관들을 위한 의료활동도 했다.

- * <Oxfam> (註: 빈민 구제를 위한 옥스포드 위원회)

- * <Voluntary Service Overseas> (영국)

- * <CUSO> (캐나다) (註: 교환 학생 및 자원 봉사자 지원 사업 기관)

알렉산드라 진료소 및 대학교 보건센터 부소장 겸 의료국장 (1985-1989)

란데라 박사는 알렉산드라 보건 센터에서 4년 간 주로 산부인과 분야의 일을 했다. 알렉산드라 보건 센터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지역에 사는 주민 25만 명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해 주었다. 동시에 이 센터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에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란데라 박사는 특히 기본적인 조산술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진료소는 1980년대의 유혈투쟁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중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처였으며 전쟁중에 호스텔 거주자들과 다른 주민들을 보살펴 주었다.

국립 직업병 센터 의료부장 (1985-1986)

이 센터에서는 주로 광산에서 일하는 흑인 노동자들을 진료해 주었다.

Soweto 지역 진료소 의료부장 (1983-1986)

진료소는 Chris Hani Baragwanath 병원의 감독을 받으며 요하네스버그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1976년의 봉기와 정부의 잔인한 대응의 여파를 이 기간 동안 Soweto 지역 어디서나 느낄 수 있었고, 의사들에게 환자들의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7. 인권을 위한 활동

무소속 병리학자의 보고서

란데라 박사는 1986년부터 1993년 사이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로부터 사인 규명에 관여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다. 그때마다 검시(檢屍)에 경험이 많은 고참 병리학자인 故 Jonathan Gluckman 박사와 함께 일했고 결과를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었다. 이러한 무소속 병리학자의 보고서가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고 가족들에게 죽은 이가 당한 일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Western Transvaal의 Driefontein 1차 보건 의료 진료소 개설

1985년 란데라 박사는 Driefontein 지역사회 위원회 및 Transvaal 농촌활동 위원회 (TRAC)와 더불어 이곳 농촌 지역사회에 기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란데라 박사는 Driefontein 진료소 설치에 참여했으며 진료소에서 일할 간호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에 열중했다. 그래서 퇴거 조치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는 농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관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Frank Chikane 신부 독살 혐의에 대한 조사

1989년 Frank Chikane 신부가 병들게 되었는데 그의 동료 중 많은

사람들은 그 병이 독살미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란데라 박사는 <전국 의료 치과 협회> (NAMDA)와 남아프리카 교회협의회에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여러 전문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다.

응급 서비스 교육

1980년대 중반에는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던 지역사회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요구가 진보적인 의료인들에게 쇄도하고 있었다. 이 때에는 의료인들이 그런 지역사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NAMDA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의사를 대신하여 당시에 흔히 입는 상처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응급 서비스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란데라 박사는 이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사람들에게 응급처치 기술을 가르쳐 주는 일에 참여했다.

고문 희생자들과 구정치인 구금자들을 위한 봉사

1985년의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NAMDA는 구금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협회 회원들은 구금자 부모들의 지원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고문 희생자들과 정치인 구금자들을 위한 진료와 심리학적 치료를 실시했다. NAMDA의 회원인 란데라 박사는 이 봉사활동에 처음부터 참여했으며, 자신의 직장과 NAMDA 진료소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며 희생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8. 각종 단체에서 맡았던 직책

* NAMDA의 전국 의장 (1990-1991), NAMDA의 부회장 (1989-1990), NAMDA의 전국 집행위원 (1986-1989), NAMDA의 Transvaal 지역 의장 (1984-1986).

* 인권위원회 전국 부위원장 (1993-1994), Trimed 의료진 이사 겸 의료 자문위원 (1994-1995). Trimed는 ESKOM (註: Electricity Supply Commission. '한국통신'과 비슷한 회사)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진임.

* 가족계획협회 Gauteng 지부 집행위원 (1992-1994)

* Transvaal 지역 Kagiso Trust (註: 교육, 보건, 청년 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985년 격동기에 설립된 NGO) 이사 (1991-1994), SAHSSO (註: 남아프리카 보건 사회봉사 기구)의 Transvaal 지역 의장.

* 남아프리카 의료 치과회의(SAMDC)의 징계위원 (1993-1995).

*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 요하네스버그 서부 지부 의장, ANC의 Mayfair 지부 집행위원, ANC 보건위원회 (Gauteng) 집행위원.

* 남아프리카 보건 사회봉사단 회원 (1989-1995).

* 진보적인 1차 진료 전국 조직 창립회원 (1987-1990).

* Parktown 주민협의회 집행위원 (1995-현재).

9. 회의조직

* 1986: 제 3차 전국 NAMDA 회의, 요하네스버그.

* 1987: 제 1차 진보적인 1차 보건의료 회의, 요하네스버그.

* 1988: 지역사회의 의료교육, 요하네스버그 Witwatersrand 대학교.

* 1989: 진보적인 보건 사회봉사단과 ANC 합동회의, 모잠비크 Maputo

* 1993: 일반진료 학회 회의, Sun 시.

10. 발표한 논문과 의장으로 초대받은 회의

1. <진실과 화해의 과정이 왜 남아프리카를 위해 필요한가> 1996년 Kwazulu Natal에서 열린 해외 자원봉사 회의에서 발표.

2. 1996년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 관한 Stellenbosch 대학교 회의>에 손님으로 초대받음.

3. 1997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청년에 관한 진실과 화해 청문회> 의장.

4. <Gauteng, North West Province, Northern Province, Mpumelanga 주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과 화해 청문회> 의장 (1996-1998).

5. 1997년 <런던 BBC 채널 4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 관한 원탁토론>에 참여.

6. 1997년 11월 Witwatersrand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과도기의 건강-기회와 도전>에 관한 연설.

7. 1997년 프레토리아 프레스 클럽에서 올해의 뉴스메이커 상 수상 연설.

8. 1988년 런던에서 열린 아동과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정치적 구금자들에 대한 고문의 결과> 발표.

9. 1998년 4월 Wisconsin 대학교에서 열린 권위주의의 유산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트로이의 목마 사건 인권 청문회에 대한 설명> 발표.

10. 1998년 7월 엠네스티 국제 법의학과 윤리 워크숍에서 <진실과 화해 건강부문 청문회-배워야 할 교훈> 발표.

11. 1998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이탈리아 고등학생들을 위한 회의에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와 청년> 발표.

12. 1998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관용과 교육을 위한 재단의 연례 시상식에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와 청년> 발표.

13. 1998년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의 개발 협력회의에서 <화해와 정의-윤리적 정치적 도전> 발표.

14. 1998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기업부문에 관한 진실과 화해 청문회 의장.

15. 1998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건강부문에 관한 진실과 화해위원회 의장.

16. 1998년 요하네스버그의 폭력과 화해 연구 센터에서 열린 <진실과 화해 회고 회의>에 손님으로 초대받음.

17. 1998년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보건과 인권에 관한 제 5차 국제회의>에 손님으로 초대받음.

18. 1999년 Witwatersrand 대학교에서 열린 <과거를 떠맡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 손님으로 초대받음.

19. 1999년 프레토리아에서 열린 외무부 회의에서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장점과 약점> 발표.

20. 1999년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스페인 인권회의에서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개황

1. 일반개관

가. 개 관

- 남아공은 약 4,310만명의 인구, 한반도의 5.5배나 되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GDP의 1/3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대아프리카 우리 교역량의 1/3을 차지하는 신흥유망 시장
- 90년 백인 정부의 흑·백 차별정책(Apartheid) 철폐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초의 94.5월 다인종 총선을 통해 당선된 Mandela 대통령의 세계적 명성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국가
-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Mandela 정부의 화해정책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나, 인종간 심한 빈부 격차 문제 등으로 국내 치안이 불안하여 흑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문제가 제 2차 민주선거를 통해 99.6.16 출범한 Mbeki 신정부의 최대 과제임.

나. 일반 개요

- 국 명 :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면 적 : 122만 km²(한반도의 5.5배)
- 인 구 : 약 4,310만명(흑인 77%, 백인 10%, 혼혈 9%, 아시아계 3%, 기타 1%)
- 수 도
 - 행정 : Pretoria(120만명)
 - 입 법 : Cape Town(270만명)
 - 사 법 : Bloemfontein(35만명)
- 기 후 :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17℃)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 종교 : 신교 66%, 카톨릭 9%, 유대교, 회교, 힌두교 및 토착신앙
- 공용언어 : 영어, 아프리칸스어 및 기타 9개 흑인 부족어
- GDP(99년) : 약 1.310억불(1인당 GNP : 3,236불)
- 교역(99년) : 487억불(수출 : 244억불, 수입 : 243억불)
- 화 폐 : Rand(\$1=R7.75, 2001.2월 현재)
- 시 차 : GMT+2(한국보다 7시간 늦음)

2. 약 사

가. 백인 정착 이전

- 수렵·채취 경제를 한 San(또는 Bushman)족과 농업과 가축사육을 한 Khoe-Khoe(또는 Hottentots) 족이 기원전부터 남아공 북서쪽 지역에 거주
- 5세기경 철기 및 금속 문화를 보유한 Bantu족이 잠베이지강과 탕카니카 및 말라위 호수지역으로부터 동부지역으로 이주, 18세기 후반까지 남아공 전역에 거주

나. 백인 이주 시작

- 1488년 포르투갈의 Bartholomu Dias가 희망봉 발견
-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케이프타운에 정박소 설립 (최초의 백인정착)
- 17세기 후반 Boer인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인이 정착하였으며, 식민지 개척을 위해 19세기 후반까지 반투족과 투쟁

다. 영국의 진출

- 1806년 영국이 케이프타운 점령
- 1834년 영국 정부가 노예제도 폐지
 - Boer인들은 오렌지강 이북 내륙으로 대이주, 원주민을 정복하고 1852년 오렌지 자치국, 1854년 Transvaal 공화국 설립
- 1899 - 1902 Boer전쟁을 통해 영국은 Boer인의 두 공화국을 병합, 남아프리카에서 절대 우위 확보

라. 남아연방의 수립

- 1909년 영국의회는 4개주 남아프리카 연방 창설 법안을 채택, 1910.5월 영연방 국가로 독립
- 1912년 남아원주민민족회의(SANNC) 창설, 흑인들의 반정부 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
 - 1923년 SANNC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 명칭 변경
- 1948년 국민당(NP) 정권 발족, 심한 인종차별 정책 실시
- 1960.3.21 통행증명서 휴대에 반대하는 흑인소요 사태 발생
 - 67명 사망, 200여명 부상
 - 1976년 유엔 총회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3월 21일을 "Human Rights Day"로 제정

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족이후

- 1961.5.31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족
- 1972년 UN, 남아공의 UN 회원국 자격 정지
- 1990.2월 de Klerk 대통령은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고 Mandela (ANC 부의장)를 석방
- 1991.7월 ANC, Mandela 의장 선출 및 민주화 투쟁 강화
- 1994.4월 최초의 흑백 다인종 자유총선 실시
 - ANC가 63% 지지 획득, 백인정권 종식
- 1994.5.10 Mandela 대통령 취임

바. 신정부 수립 이후

- 1994.5월 ANC 주도의 거국 연립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 수립
 - ANC, 국민당(NP), 잉카타자유당(IFP) 참여
- 1996.7월 NP의 연립정부 탈퇴로 사실상 ANC 단독 정부체제
- 1999.6.2 제 2차 민주총선 실시
 - ANC 66.36% 지지 획득
- 1999.6.16 Mbeki 대통령 취임

3. 정 치

가. 정치제도

- 대통령 중심제이나, 내각책임제 요소를 강하게 가미
 - 대통령은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보유
 - 의회(하원)에서 대통령 선출
 -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 보유
- 행정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9개주로 구성
 - 각 주정부는 의료, 건설, 교육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법률, 의회, 행정기구를 보유
 - 남아공의 수도는 행정수도(Pretoria), 입법수도(Cape Town), 사법수도(Bloemfontein)로 분리되어있으며, 최대도시인 상업중심도시인 요하네스버그(인구 500만)임.

나. 의 회

- 하 원(400명)
 - 99.6.2 총선결과 아프리카민족회의(ANC) 266석, 민주당(DP) 38석, 잉카타자유당(IFP) 34석, 신국민당(NNP) 28석, 기타 34석

- 상 원(90명)
 - 각 9개 지방정부로부터 10명씩 선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정역할 수행

다. 최근 국내정세

- 94.5월 아프리카국민회의(ANC), 국민당(NP), 잉카타자유당(IFP) 3당이 참여한 거국연립정부가 수립된 이래 ANC 주도하의 민주화 과정이 원만히 추진되어옴.
 - 신정부는 급진적 개혁보다는 화합을 통한 흑·백 공존사회 건설의 온건한 개혁을 추진중
 - 민주개혁 과정에서 정치·사회폭력이 급증, 폭력근절이 정권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 96.7월 국민당(NP)이 연립정부에서 탈퇴, 일부 IFP가 참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ANC의 단독 정부가 됨.
- 신정부는 국가재건계획(RDP :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한 경제부흥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함.
 - 방문·초청 외교를 강화, 외국자본 유치에 전력 경주
 - 주택사업은 예상보다 부진하나 상.하수도, 전기, 의료, 교육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둠
- Mandela 대통령은 노령(1918년생)을 감안, 97.12월 ANC 의장직을 사임하였으며, 97.12월 ANC 전당대회에서 온건성향의 협상전문가인 Mbeki 부통령이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
- 99.6.2 총선에서 ANC가 66.36% 지지를 획득 총 400석중 266석을 차지함으로써, Mbeki 부통령이 ANC 제2기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됨.
- Mbeki 대통령은 철저한 실무형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고용창출, 빈곤타파, 치안확보 등 과제 해결을 위해 종전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중

라. 대외관계

- 과거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동맹 독자 외교로선도 견지.
 - 94년 하반기 UN,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비동맹운동, 영연방 등 국제기구에 모두 가입

- 96.9월 Mandela 대통령은 3년 임기의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의장으로 피선
- 97.4월 뉴델리 개최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서 남아공은 1998 - 2001년 비동맹 의장국으로 피선
- 남아공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리비아, 쿠바 등과도 우호관계 유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의 1/3을 차지하는 경제력과 만델라 대통령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역분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
- 신임 Mbeki 정부의 대외정책은 Mandela 정부의 독자 외교로선 및 비동맹 외교 정책을 계속 추구

4. 사회, 문화

가. 치안

- 1990년 인종차별 철폐이후 정치폭력과 함께 마약, 차량도난 등이 증가
 - 치안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
- 남아공을 거점으로 한 주변국과의 밀수 성행으로, 국경 밀수 단속방안 마련중
 - 특히 모잠비크로부터 밀수된 무기는 남아공 사회 혼란의 큰 원인으로 작용
- 주변국가로부터의 밀입국자가 사회범죄 및 실업을 증가의 원인
 - 최근 발표에 의하면 남아공 인구의 6-20%가 밀입국자

나. 언론

- 서방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자유로운 편이며 영자신문, 아프리칸스 신문, 부족언어 신문 36개 신문 발행
 - 주요 영자지 : The Star, Business Day, Citizen, Sowetan 등
- TV 방송국은 4개 채널이 있으며 각 방송은 영어, 아프리칸스, 흑인 토착어로 시간대별 방영
- 라디오 채널은 다수 존재하나 각 지역에 따라 사용언어가 상이
 - TV가 도시 및 백인지역에 주로 보급되어 있어, 대다수 흑인지역에서는 아직도 라디오가 절대적 영향력을 가짐

6.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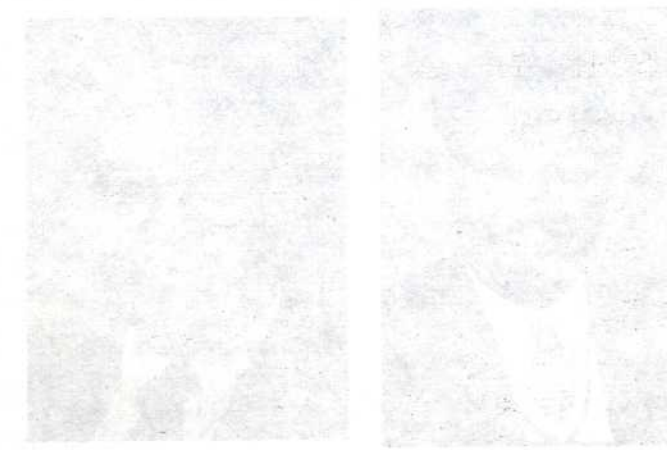
- 남아공이 1950년 UN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1개 비행중대 파견)함으로써 양국간 우호관계가 유지되었으나,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유엔 제재로 78년이후 공식 관계가 단절됨.
- '92.12.1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93.2월 양국 대사관이 설치된 후 양국관계는 급속히 발전 (주한 남아공 대사대리 : Mr. Isaac Kekana)

나. 동포 및 진출 상사 현황

- 전체 동포수는 약 1,400명으로 다수가 요하네스버그에 거주
 - 시민권자 80명, 영주권자 400명, 체류자 및 기타 920명
 - 케이프타운, 더반 및 프레토리아에도 일부 교민 거주
- 진출상사는 16개 상사로 약 30명이 주재

다. 문화교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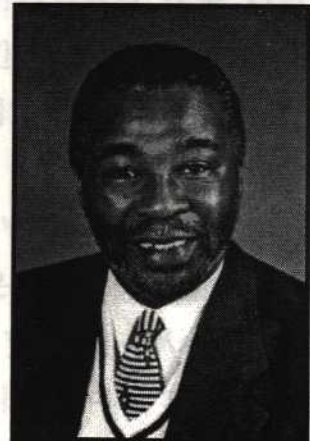
- 경 기도 - Gauteng 주간 자매결연(95.5)
- 경상북도 - North West 주간 자매결연(98.9)
- 부 산 시 - Western Cape 주간 자매결연(2000.6)
- 강 원 도 - Mpumalang 주간 자매결연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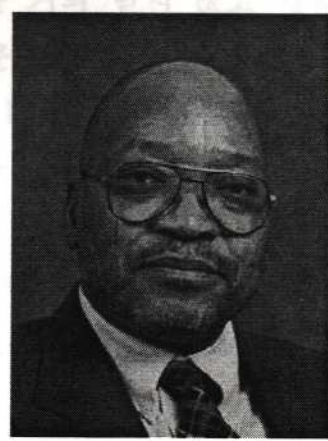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보 음베키대통령



제이콥 주마 부통령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보고서』의 주요 내용

김 영 수(전문위원/보고서팀)

* 1995년 11월 남아공 의회는 인종차별시대(1960-1994)의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성공회 대주교 Desmond Tutu를 위원장으로 하는 17인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조사하고, 다양한 청문회를 열어 인권침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었다.

* 위원회는 피해자 21,300여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3백 5만 여 명 정도가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파악하였다.

* 위원회는 3개의 하부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것은 인권침해위원회, 사면위원회, 보상 및 회복위원회이다. 각각의 하부위원회는 조사국을 설치하여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위원회의 사면위원회는 2000년 11월 1일 현재, 사면신청자 7112명 중 849명에게 사면을 허용하였고, 5392명에게는 사면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여 조사하였고, 보상 및 회복위원회는 인권침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고,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 위원회는 98.7월말 활동을 1차적으로 종료하고, 98.10.29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대표적인 학살의 역사

- 1) 17~18세기: 인종사냥
- 2) 1899년~1902년: 영국과 네델란드의 전쟁으로 흑인 약 20,000여 명 사망
- 3) 1960년 샤프빌 학살
- 4) 1976년 소웨토 학살
- 5) 1978년 남아공 방위군(SADF)이 앙골라에서 흑인 저항운동 세력 600여

명 학살

- 6) 1983년 흑인 노동자 560,334명이 실형
- 7) 1984년 흑인 노동자 1,300여 명이 사상
- 8) 각종의 인종 차별법

==> 이러한 학살에 동원된 폭력은 다섯 가지 형태의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폭력 둘째, 법적 폭력 셋째, 제도적 폭력 넷째, 구조적 폭력 다섯째, 개별적 폭력 등이다.

위원회의 목표와 기능

1. 위원회의 목표

- 1) 반인권적 폭력의 원인, 성격, 정도 등, 즉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희생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폭력행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동기와 관점, 그리고 폭력의 전례, 정황, 요인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완전하게 밝힌다.
- 2) 정치적 동기에 비롯된 행위와 법률의 조항에 상응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사실을 전면 폭로하는 자들에게 사면을 단행한다.
- 3) 희생자의 운명과 행방을 알리고 희생자가 당한 폭력에 대해 스스로 증언할 기회를 제공한다.
- 4)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맞는 보상 및 회복대책을 마련하여 희생자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을 회복한다.

2. 위원회의 기능

- 1) 인권침해의 내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발의, 조정, 조사한다.
- 2) 희생자 관련자로부터 정보수집과 증거접수의 통로를 제공하고, 이를 발의, 조정한다.
- 3)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모든 연관사실을 폭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에 대한 사면허가를 적용하며, 이 적용을 사면위원회에 위임한다.
- 4) 판보를 통해 사면허가의 결정을 발표한다.
- 5) 정치적 동기에 의한 가해행위의 사면허가를 촉진한다.
- 6) 반인권적 폭력 또는 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행동을 은폐하고자 자들이 없앤 문건을 조사한다.

- 7) 위원회의 활동과 조사내용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준비한다.
- 8)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한다.
- 9)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행적적, 법적 조치들을 권고한다.
- 10) 조사시 전례, 정황, 요인, 동기 등을 조사한다.
- 11) 은폐 결정 및 은폐 목적의 글들에 대한 조사한다.

위원회의 체계와 운영

1. 하부위원회 체계

- 1) 인권침해 위원회
- 2) 사면위원회
- 3) 보상 및 회복위원회

==> 각 위원회는 산하에 '조사국'을 설치하고, 각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조사를 진행시킴

2. 중앙 및 지방 사무국

- 1) 중앙 사무국
- 2) 지역 사무국 :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이스트 런던, 더반

3. 운영원칙

- 1) 인권침해의 성격, 원인, 규모 등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전례연구, 정황파악, 요인, 내용, 동기 등에 대해서도 포함
- 2) 총체적인 인권침해에 있어서 개인, 정부당국, 제도 및 기관의 일치성 여부
- 3)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국가나 국가기관에 의한 의도적 계획의 여부
- 4) 총체적인 인권침해의 체계적인 패턴의 여부
- 5) 조사과정에서 권고안들을 마련해 나간다.

4.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기준

- 전쟁이론, 국제인권규약, 남아공의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가치로 설정

- 그러나 시민전쟁과 게릴라전쟁에 대한 논쟁이 존재(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의 논쟁: 원인의 정당성 여부, 무력사용의 목적의 합리성 여부 등)

위원회의 특수성

1. 개인적 가해자에 대한 사면권 보유
2. 소환, 조사, 체포권한이 다른 국가들의 위원회에 비해 강력
3. 정부의 공식적 자료에 대한 접근의 권한이 다른 국가들의 위원회에 비해 강력
4.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대중참여구조(public process) 마련: 다양한 청문회
5. 최초의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
6. 위원회 구성원들과 운영예산의 풍부

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1. '사면법의 제정'을 둘러싼 문제

- 1) 사면법: 1992년에 제정
- 2) 대다수 흑인들이 '사면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였지만, 백인들은 흑인 저항 운동 세력과의 협상에서 '사면법 제정'을 주요 협상의 카드로 제시하였다. 사면법은 백인 지배세력과 흑인 정치세력간의 협상의 결과이다. 1993년 '임시헌법'의 전문에서 '남아공 사회의 화해와 재건을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①정치적 봉기, 정치적 저항, 출근거부투쟁, 파업, 시위 등 ②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침해 ③국가 및 국가기관에 의한 의도적 계획의 결과)에서 비롯된 사건들에 대해 사면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임시헌법은 '정의와 사면'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고, 사면의 문제를 민주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백인들은 사면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1993년 12월에 아파르타이드 체제의 폐지를 의회에서 비준하였다.

3) '사면법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

* 논쟁의 전제조건

==>그러나 국가는 사면 신청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존재(국가의 장기적인 화해의 관점, 사회적인 화해와 재건의 실현)하지만,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문제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관건이다.

- ① '정의'가 단순히 분배의 차원이라면, '사면과 정의'의 상호관계를 연계시키기가 어렵다.
- ② 사면은 너무 쉽게 책임을 무시할 수 있게 한다.
- ③ 사회적 경향 중의 하나는 '가해자들과 고용주들을 일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④ 사회적 구조의 민주적 변화의 과정에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 존재한다.

4) 사면의 조건과 과정

- ① 가해자들의 사면신청
- ② 범죄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폭로
- ③ 사면공청회의 개최
- ④ 객관적 기준의 적용

5) 사면의 판결 기준

- ① 인권침해 행위, 목인행위, 가해행위를 한 사람의 동기
- ② 인권침해 행위, 목인행위, 가해행위가 발생한 정황, 특히 그러한 행위가 정치적 봉기 및 ③ 저항에 대한 대응과정으로 혹은 그 일부로 자행되었는가
- ④ 인권침해 행위, 목인행위, 가해행위의 정도 및 법적·사실적 성격
- ⑤ 인권침해 행위, 목인행위, 가해행위의 대상이나 목적, 특히 정적이거나 국가 재산이나 집단을 겨냥한 것인지 개인재산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인지
- ⑥ 인권침해 행위, 목인행위, 가해행위가 조직, 기구, 해방운동을 통해 혹은

그러한 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조직원, 대리인, 혹은 지지자인 조직의 명령이
나 조직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⑦ 인권침해 행위, 묵인행위, 가해행위가 정치적 목표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
고 있는가의 여부

==> 사면은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000년 11월 1일 현재, 사면신청자 7112명 중 849명이 허용되고, 5392명
이 거절당함

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념'상의 논쟁

* 논쟁의 전제조건

==> '국가통합'은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 평가체계, 다양
한 역사' 등을 수용해야 한다.

1) '희생자', '가해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문제

- 생존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자를 포함하는 문제
- 인권침해의 범위를 범주화하는 문제
- '개별적 인물과 국가기관을 구분'하는 문제

2) '화해'는 사회발전에 있어서 목적인가 과정인가?

3) '화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인식

- 피해자 수준
- 가해자 수준
- 공동체 수준
- 국가수준; 상호평화공존의 문제 등

4) '사과와 책임'에 대한 인식

-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 기존 국가의 합법성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 폭력 집행자들의 과오를 어떠한 수준, 내용 등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 '사과'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의 문제
- 개인적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적·제도적 수준에서의 책임의 문제

5) '화해와 재건'에 대한 인식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는 문제
- 물질적 성장과 국가경제의 재건 문제
- 존엄성의 회복 문제

6) '진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

- '진실'에 대한 개념을 상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 '진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문제
- '진실'에 대한 접근과정에서 냉전의 관점, 국제 공산주의의 관점, 민족주의
의 관점 등을 인지하는 문제
- 진실과 화해와의 관계에서 어느 지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
- 개별적 사건에 대한 진실의 문제인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실인지의
문제

위원회의 활동 및 조사 방법

*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범주화(법 1조 9항)

- 사망, 고문, 가혹행위(severe ill treatment), 납치, 집단폭력(associated
violation)
- 미수, 공모, 선동, 명령, 매춘알선 등
- 따라서 위원회는 총체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광의의 해석, 협의의 해석 사
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곡예사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조사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육체적·정신적 고통(physical harm, mental harm)의 문제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1. 위원회를 구축

- 위원회 구성의 시점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에 봉착
- 많은 피해자들이 위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미약

2. 정보수집체계를 구축

-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너무 다양한 경우
- 침해장소가 너무 다양한 경우
- 많은 가해자들에 의해 동시에 피해를 받은 경우
- 다양한 정보를 통일시키는 과정

3. 정보관리를 체계화

- 진술확보(희생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고용, 다양한 공동체에서 전개되는 각종의 공청회와 청문회 참여, 고안된 진술 확보 프로그램)
- 등록
- 데이터 분석과정
- 확정
- 지역에서의 사전 결정
- 전국적인 결정

4.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5. 청문회 과정

- 희생자 청문회

- 사건 청문회
- 특별(어린이, 군, 여성 등) 청문회
- 기관 청문회: 보건 의료기관, 법원, 미디어, 경제단체, 감옥 등)

6. 조사과정

1) 조사지침

- 정부 수준의 정책에 대한 조사
- 특수기관 및 특수조직에 대한 조사
- 권력남용의 체계적 형태에 대한 조사
- 국제적 요소에 대한 조사
- 조직적 저항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

2) 자료활용 지침

- 청문회 활용
- 사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7. 연구과정

8. 사면신청시 제출된 자료의 보관 및 체계화

9. 증언자를 보호하는 과정

- 정의부 장관(the Minister of Justice)이 책임
- 1995년 후반에 공식화하고, 1996년 5월 1일에 위원회가 제도화
- NGO조직의 활동가를 고용
- 보호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일반 경찰들의 일상적인 직무를 해소시킴

백인정권의 국가기록 파괴

1. 검열, 압류, 유폐, 인멸 등을 자행
2. 추적하기 불가능한 것 중의 하나가 국가안보관리체계와 관련된 자료
3. 군과 경찰의 자료 역시 마찬가지임
4. 기록파괴 자체에 대한 조사

* 어떠한 동기로 파괴되었는가?

* 문서의 파괴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5. 위원회는 개별적,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단체, 정당 등의 기구를 중심으로 자료 조사

위원회 활동의 법적 장애

1. 사면조항에 대한 반대세력들이 헌법소원: 대법원은 '사면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결정
2. 위원회의 활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공청회 개최
3. 법 30조(조사과정의 원칙과 방식)에 대한 문제점
 -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는가?
 - 가해자를 목격자들만의 증언과 공청회로 규정할 수 있는가?
 - 가해자들에게 서류 검토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 가해자에게 목격자와 직접 대면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

가혹행위(SEVERE ILL TREATMENT)의 형태

- ①강간
- ②성희롱
- ③육체적 구타
- ④시위 과정에서 과잉진압
- ⑤화공약품에 의한 상해
- ⑥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금
- ⑦추방 및 유형
- ⑧의도적인 음식물 지원의 보류
- ⑨의도적인 의료시설 지원의 보류
- ⑩주택 파괴 등

위원회의 조사결과 분석

1. 구체적인 희생자 명

2. 심리적인 결과:

-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혹은 심리적 충격(trauma), 가해자들의 심리적 전술 규명
- 심리적 폭력의 유형: ①언어폭력 ②사상탄압 ③심리적 테러 ④비인간화

3. 가족들에 대한 폭력의 결과

- 가족생활의 붕괴
- 가족 분리
- 가족 구속
- 공동체내 불신의 유도
- 가족 사망
- 경제적 고통

4. 공동체에 대한 폭력의 결과

- 생활조건의 고통
- 공동체내 혹은 공동체간의 폭력 유도
- 흑인 공동체의 포섭

권고 및 보상의 제안

1. 대원칙

- 1)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제법과 국제관습에 따른다.
- 2) 보상(구제조치, 손해배상, 건강회복, 존엄성 회복 등)은 국제적 원칙에 따른다.

2. 보상 및 회복정책의 원칙

- 1) 발전적 원칙
- 2) 단순함과 효율성의 원칙
- 3) 문화적 접근의 원칙
- 4) 공동체에 기반하는 원칙
- 5) 발전능력을 제고시키는 원칙

6) 치료와 화해를 증진시키는 원칙

3. 보상의 형태

1) 임시 특별 보상

2) 개별적인 경제적 보상: 일괄적인 보상 대책은 문제

- 시간의 누적
- 화폐가치의 변화 등
- 가족의 수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다름

3) 사회적 상징의식 구축

4) 공동체 생활조건 개선 프로그램: 의료 및 건강시설의 확충, 직업훈련, 교육, 환자 전문상담 시설, 주택 등

5) 제도적 개혁

4. 상징적 보상

1) 개인적 수준

- 사망 진단서
- 이장
- 비석 건립
- 범죄기록의 삭제

2) 공동체적 수준

- 공공시설의 보충
- 추모제
- 문화적 추모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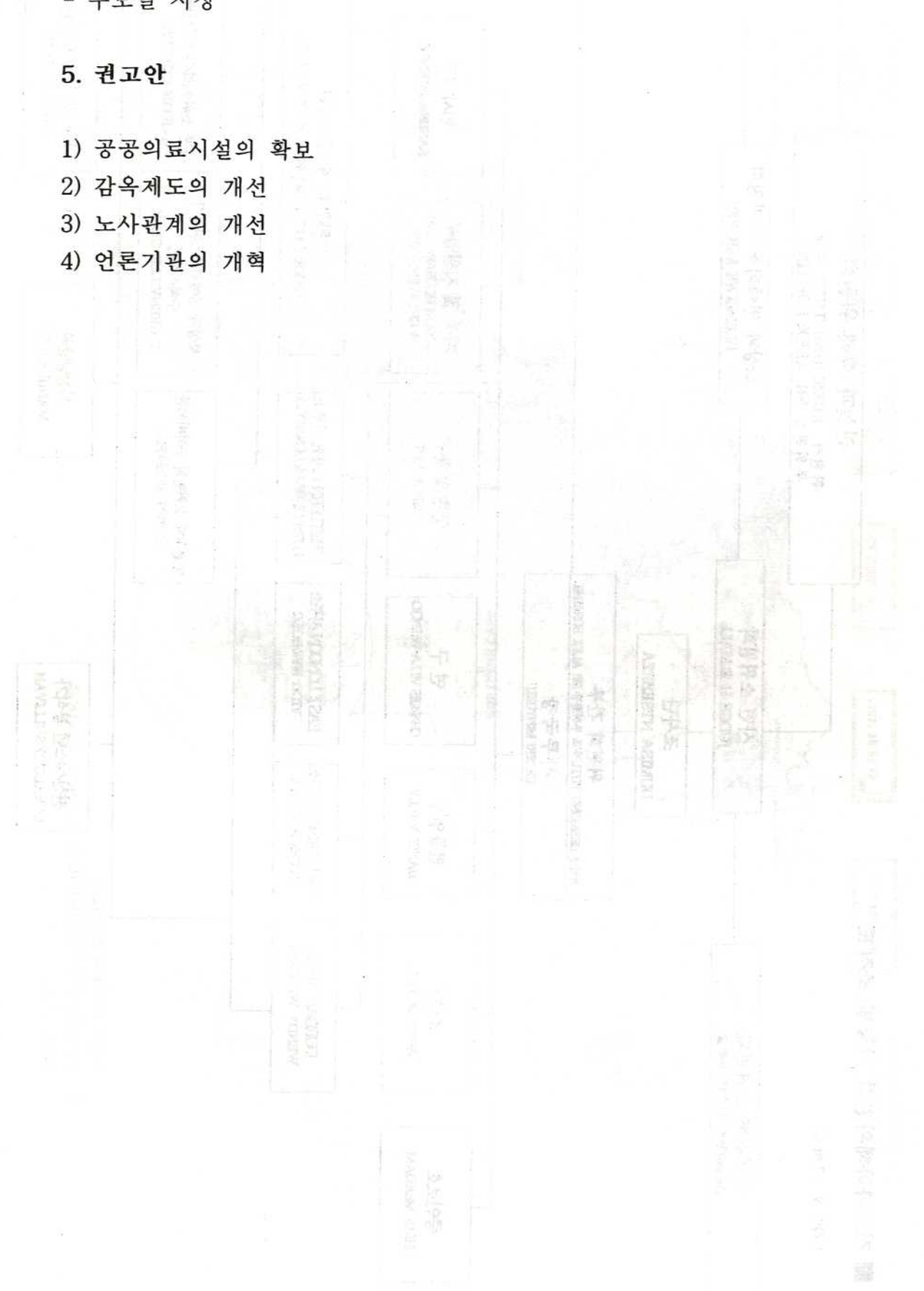
3) 국가적 수준

- 공공시설의 확충
- 추모제

- 추모일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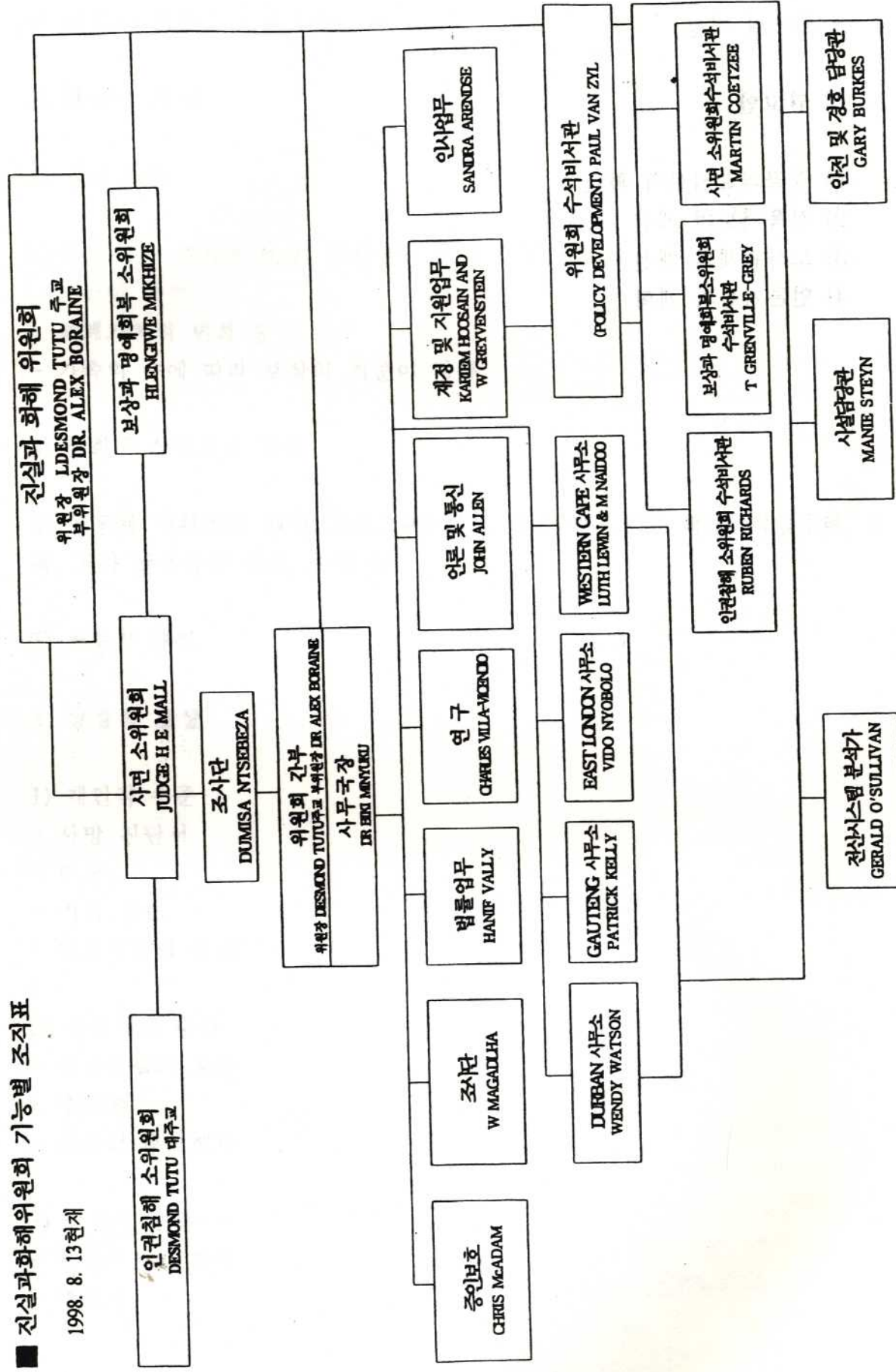
5. 권고안

- 1) 공공의료시설의 확보
- 2) 감옥제도의 개선
- 3) 노사관계의 개선
- 4) 언론기관의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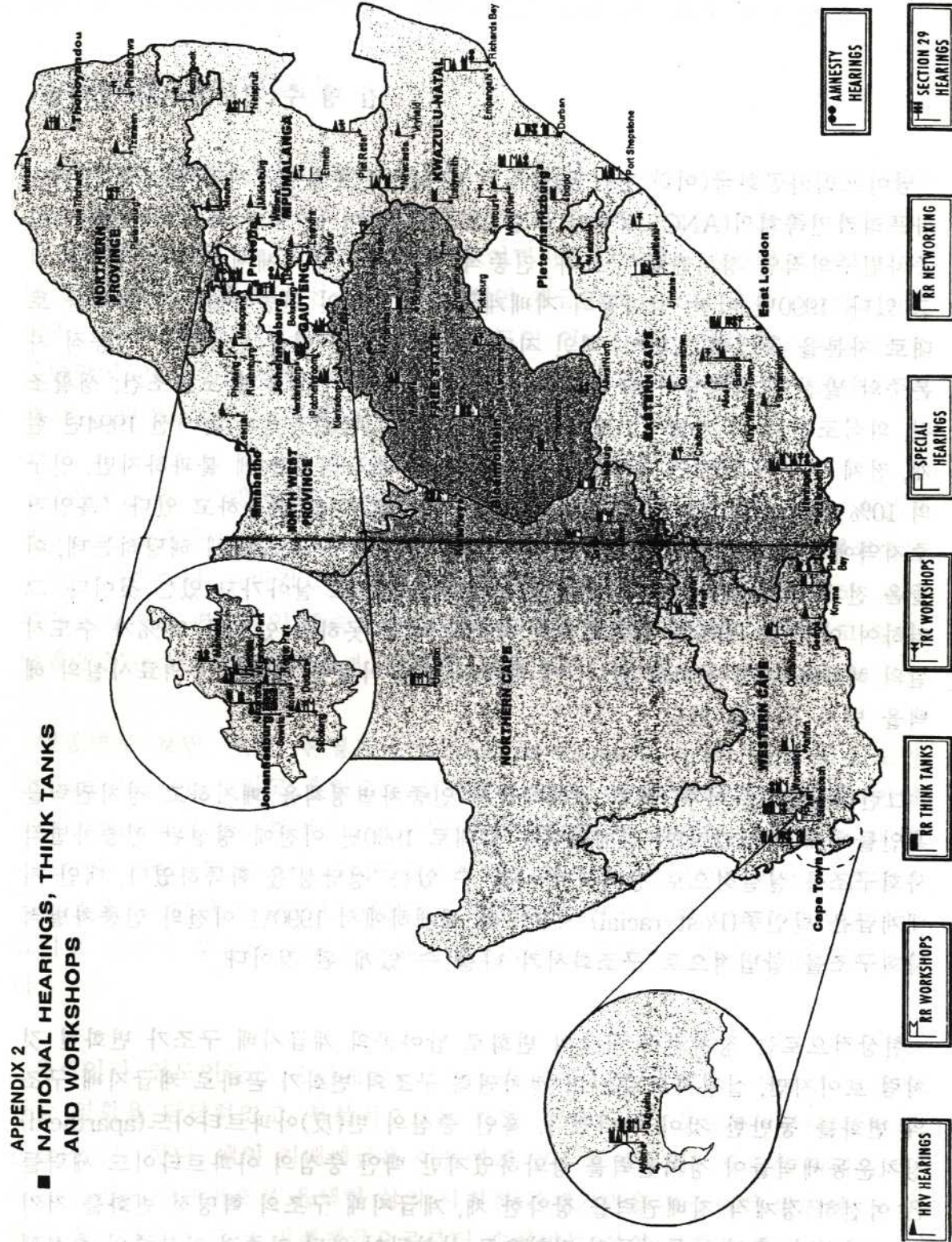


진실과 화해위원회 기능별 조직표

1998. 8. 13 현재



APPENDIX 2
NATIONAL HEARINGS, THINK TANKS
AND WORKSHOPS



남아공 사회의 인종차별적 지배구조

김 영 수(전문위원/보고서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는 1990년 인종차별정책의 폐지와 1994년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정권의 수립으로 약 3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치권력 구조와 '인종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1990년 이전, 남아공의 지배계급은 전면적인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토대로 자본을 축적해 오면서, 백인 지배계급을 제외한 다른 인종들은 인종적 자본주의 발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남아공의 인종별 노동조건, 생활조건, 의식조건 등이 차별적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ANC정권이 들어선 1994년 현재, 전체 인구의 76%인 흑인들은 남아공 전체 소득의 29%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10% 내외인 백인들은 남아공 전체 소득의 58.5%를 점유하고 있다. '흑인거주지역에서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흑인들은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전체 백인 소득의 2% 수준'에 불과한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중 80%가 전기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70%가 수도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80% 이상이 현대적인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 이후, 백인 지배계급은 인종차별정책을 폐지하고 정치권력을 흑인들에게 빼앗겼지만, 경제권력을 토대로 1990년 이전에 형성된 인종차별적 사회구조를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백인 지배계급은 탈인종(Post-racial)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1990년 이전의 인종차별적 사회구조를 합법적으로 구조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로 남아공의 계급지배 구조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가 곧바로 계급지배 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것이 아니었다. 흑인 중심의 반(反)아파르트타이드(apartheid) 정치운동세력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지만 백인 중심의 아파르트타이드 세력들은 여전히 경제적 지배권력을 장악한 채, 계급지배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저지하고 있으며, 흑인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심화되어 왔던 인종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신-아파르트타이드(Neo-apartheid) 사회구조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백인 지배계급은 인종적 자본주의 축적체제 하에

서 형성되어 왔던 인종차별적 사회구조를 인종차별주의가 폐지된 민주적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적 사회구조로 전화시켜 내려 하고 있다.

1. 종족별·인종별 현황

남아공은 1948년 국민당(National Party)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영국과 네델란드의 직할 식민지였고, 국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1960년까지는 영국연방의 하나였다. 국민당은 네델란드계 백인 이민자들의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배정당으로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형성했던 계급지배 구조를 온존·강화하면서 백인 이외의 대표적인 흑인·유색인·인도인 인종들을 탄압하였고, 이러한 인종탄압에 기초하는 착취체제를 강화하면서 백인제국, 즉 '인종적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하는 백인국가를 건설·유지해 왔다.

남아공은 열 한 개 종족과 네 개의 대표적인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흑인의 대표적인 종족은 줄루(Zulu)족, 코사(Xosa)족, 소토(Sotho)족이다. 그 이외에는 소수 종족들이다. 일반적으로 줄루족은 전투적인 종족으로 인정되고 있고, 코사족과 소토족은 평화적인 종족으로 대화와 타협을 즐기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만델라(Mandela) 전 대통령과 음베키(Mbeki) 현 대통령은 소토족 출신이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혼혈유색인(Coloured People), 아시아 계통의 인도인(Indian People), 그리고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아프리카너(Africkner)로 불리는 백인들로서, 이들은 주로 네델란드계 백인 이주자들의 후손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유색인들로서 백인과 기타 '유색인종' 사이의 혼혈인 계통이고, 세 번째 부류는 17~8세기에 인도에서 건너온 인도인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남아공의 피지배·피착취 계급으로서의 토착 흑인들이다.

유색인과 인도인들은 중간계급·계층으로 존재하면서 계급·계층적 대립의 완충 역할을 담당하였고, 부분적으로는 백인 지배계급의 분할통치전략의 수혜자들이기도 하다. 백인 지배계급은 이들에게 일정한 법률적·제도적 권리와 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윤택한 삶의 사회적 존재기반을 보장했던 반면에, 유색인과 인도인들은 백인 지배계급으로부터 수혜받는 삶의 사회적 존재기반에 따라 인종차별적인 지배에 저항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83년 이후 "3원의회(Tri-Cameral)"의 한 구성 주체로 나서면서 흑인에 대한

탄압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백인 지배계급의 동맹세력으로 나서게 되었다. 1983년 이전까지는 백인만의 의회로 구성·운영되었는데, 인도인종과 유색인종의 대표가 대표가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3원의회(Tri-Cameral)제”, 즉 의회가 백인, 인도인, 유색인만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2. 흑인 독립화(자치화) 전략

백인 지배계급은 이러한 인종적 차별통치 전략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백인 지배계급은 흑인들을 종족(tribe)별로 분할하여 통치하는 전략도 구사하였는데, 그것은 1959년의 ‘반투(Bantu) 자치 촉진법’으로 시작되었다.

흑인지역을 부족통치기구, 지방통치기구, 지역통치기구 등으로 분리, 설정하여 행정의 용이성과 아울러 흑인 자치화의 초석을 1951년의 반투통치기구법이 마련하였다면, 1959년 버르워드 수상이 발표한 반투자치촉진법은 흑백간 분리 발전의 법제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1962년 1월, 트란스케이가 시범적인 자치정부로 탄생하게 되었고, 1963년 이후 시스케이, 보프타츠와나, 레보와, 벤다, 콰크와, 크와줄루, 크왕그와네, 관데벨레 등의 지역에서도 자치정부가 탄생되었다.

1971년의 ‘반투 홈랜드(homeland) 법’의 제정으로 그러한 종족 분할통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자치정부들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프레토리아(pretoria) 정부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독립정부, 즉 독립된 홈랜드를 창설하여 자체의 헌법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흑백인간의 완전한 분리독립과 종속이 마무리되었다. 흑인들이 홈랜드법을 보유하여 남아공의 국민이 아닌 홈랜드의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경우를 정치적·인종적 독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종속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경우를 들면, 홈랜드 운영에 필요한 세입의 60% 이상을 프레토리아 백인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해야만 하고, 흑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자격으로서만 백인 지역에서 노동할 수 있게 된 점 등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로서의 흑인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팔 권리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홈랜드(Homeland) 법’에 의해서 흑인들 간에는 종족별 자치연방으로 분리·독립하려는 경쟁구조가 형성되었고, 1981년까지 트란스케이(Transkei), 시스케이(Ciskei) 보프타츠와나(Bophuthatswana), 벤다(Venda) 등 네 개 지역이 홈랜드로 독립하였다. ‘홈랜드 법’에서 독립을 예정하고 있던 총 열 개의 흑인

자치정부 가운데 여섯 개 자치정부는 미독립 상태였다.

그리하여 흑인 종족들에 대한 백인 지배계급의 분할통치정책으로 흑인들간의 통일된 정체성이 파괴되었고, 뿔뿔이 흩어진 홈랜드에서 재종족화 함으로써 흑인들의 인종적 단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인종차별적인 노동·생활조건

흑인들은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노동자로, 광산 지역에서는 광산 노동자로,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제조업 노동자로 존재하였다. 1985년 현재, 흑인들의 전체 소득은 남아공 GNP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흑인 노동자들은 인종차별에 근거한 억압적 노동정책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가혹하게 착취당했다.

<표>인종별 월 평균임금 (단위: 랜드)

	백인 노동자		인도인 노동자		유색인 노동자		흑인 노동자	
	1973	1983	1973	1983	1973	1983	1973	1983
광산업	475	1531	133	750	103	495	29	287
제조업	389	1478	111	516	104	423	71	370

출처: ILO 보고서, “남아프리카공화국”, 1985년.

위의 <표>는 1973년과 1983년 월 평균임금에서 드러나는 인종차별적 임금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1973년의 경우, 백인 광산업 노동자들은 흑인 광산업 노동자들에 비해 약 15배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 1983년에도 역시, 백인 광산업 노동자들은 흑인 광산업 노동자들에 비해 5배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인종간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1995년 현재 ANC정권 하에서도 제조업 흑인 노동자들은 백인 노동자들에 비해 월 평균 4~10배 정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비공식적 부문 또는 농업부문의 흑인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임금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 10월 말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의 10.7%만이 월 4,500랜드(R) 이상을 받고 있으며, 26%의 노동자들은 월 500랜드(R)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월 500랜드(R)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흑인들이었다. 그런데 1998년 8월 현재 미국 1\$가 남아공의 6R로 교환되는 비율에 근거하면, 500랜드(R)는 약 83\$(미국달러)에 불과하다.

한편 도시 지역의 흑인 노동자들은 백인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흑인의 집단거주지구(Township)에서 생활하였다. 1950년에 제정된 백인정권의 집단거주지역법 때문이었다. 이 법의 핵심은 “인종별로 구분된 거주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여야 하고, 흑인들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백인 거주지역에 낮에만 출입”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집단거주지구(Township)에 사는 흑인들은 각종의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수단, 예를 들면 수돗물이나 전기 및 공공의료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것을 방증하고 있는 사실이 1999년 총선에 제출된 ANC의 선거공약집에 나타난다. ANC정권은 1994년 이후 인종차별적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노동자계급의 제반 권리의 보장, 3백만 흑인들에게 수돗물 공급, 2백만 가구에 전기 공급, 75만 채의 주택 공급, 공중 의료시설의 확충, 3백만 흑인들을 위한 전화시설 구축 등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흑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1996년 말 현재 남아공 경제활동 인구 중 9,113,847명이 고용되어 있고, 4,671,647명이 실업상태이다. 전체 실업자의 42.5%가 흑인, 20.9%가 유색인, 12.0%가 인도인 그리고 백인은 4.6%이다. 1999년 현재 극빈층 20%의 소득은 남아공 전체 소득의 1.5%에 불과하지만, 최상층 10%는 남아공 전체 소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극빈층의 대다수는 흑인들이고 최상층은 백인들이다.

또한 1999년 3월에 ANC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업율은 37%이고, COSATU(남아프리카노동조합총연맹)가 2000년 9월에 발표한 실업율은 약 40%에 가깝다. 남아공 전체 실업자의 42.5%가 흑인, 20.9%가 유색인, 12.0%가 인도인, 그리고 백인은 4.6%이다.

이처럼 남아공의 백인 지배계급은 인종차별을 근간으로 한 착취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인종적 자본주의 체제를 성장·강화시켜 왔고, 이 과정에서 흑인 노동자들은 이중적 초과착취 구조, 즉 인종모순과 계급모순의 착취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4. 백인정권에 대한 흑인들의 대표적인 저항

흑인 노동자들은 1958년 광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흑인 노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파업투쟁 이후, 남아공 내에서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 남아공에서 1950년대 이후 대중적 투쟁이 단절된 주요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백인정권은 1960년 샤프빌(Sharpeville) 봉기를 무장으로 학살한 이후 흑인들의 반(反)아파르트타이드 운동과 집단적 저항에 대한 탄압정책을 강화하였다. 둘째, 흑인 노동자들의 1958년 광산파업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에 흑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도해 왔던 흑인노동조합회의(SACTU)가 불법화되고 주요 활동가들은 해외로 추방되었다. 셋째, 반(反)아파르트타이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던 남아공 공산당과 아프리카민족회의가 불법화되고 해외로 추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탄압으로 반(反)아파르트타이드 운동은 오히려 해외의 투쟁 근거지와 무장조직인 ‘민족의 창(MK)’을 중심으로 무장계급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흑인들은 대중적 투쟁을 1960년 샤프빌(Sharpeville) 봉기와 1972~3년 자동차 산업의 흑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적인 파업투쟁으로 부활시켰다. 1973년, 요하네스버그의 159,000명보다도 많은 165,000명의 흑인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더반(Durban)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파급된 총파업투쟁이 발생하였는데, 더반 흑인 노동자 중 약 100,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반의 총파업투쟁은 대공장인 직물업과 철강산업의 흑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1973년 말부터 1974년 초까지 진행된 전국광산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도 바로 더반 총파업투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흑인 노동자들은 1973년의 더반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1974년 초 전국광산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 1976년 소웨토(Soweto) 투쟁, 1978년 노동관계법 개정 투쟁 등 각종의 투쟁을 통해 남아공의 지배구조를 균열시키는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흑인 노동자 계급은 1980년부터 1985까지 진행된 흑인 노동조합연맹(Cosatu·Nactu) 건설투쟁, 1983년 통일민주전선(UDF)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3원의회제’ 반대투쟁, 1985년 이후 국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항하는 인민전쟁투쟁의 주체, 그리고 1988년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투쟁 등을 통해

아파르타이드 체제를 붕괴시켰다. 흑인 노동자 계급은 1970년대의 계급투쟁을 계승하는 1980년대의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지배 구조를 균열시키고 ANC정권을 창출하였다.

1979년 흑인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최초로 인정하는 노동관계법이 1972년부터 시작된 1970년대 흑인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개정되었다면, 1990년 아파르타이드 폐지정책은 흑인 노동자들의 1980년대 대중적 계급투쟁으로 강제되었다.

그러나 백인 지배계급은 1970년~1980년대 흑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물리적인 억압정책, 개량적인 포섭정책, 백인 통치권력에 대한 흑인 노동자들의 '동의구조'를 강화하는 정책 등으로 맞섰다. 예를 들면, 남아공의 백인 지배계급은 흑인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였으며, 부텔레지(잉카타자유당의 총재)를 중심으로 한 크와줄루-나탈의 흑인들을 남아공의 새로운 중산계급·계층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흑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흑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백인들은 계급적 지배구조를 온존·강화하고, 흑인 노동자들이 '집단적 저항주체'로 변화되는 것을 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흑인 노동자들은 "계급구조가 계급형성과 계급투쟁에 대한 억압적이고 제한적인 장치를 강화한다 할지라도 계급으로 형성된 노동자계급은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계급주체를 형성시켜낸다."라는 라이트(E. O. Wright)의 지적처럼, 백인 지배계급과의 투쟁을 통해 남아공의 계급적 지배구조를 균열·변화시켰다.

흑인들에 대한 백인정권의 폭력적 학살

김 영 수(전문위원/보고서팀)

1. 국가폭력의 집행주체

남아공 정권의 국가안전부(NSMS)는 흑인에 대한 폭력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다. 이 기구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지시로 움직이면서 흑인들을 총칼로 탄압하였다. 남아공 전체 인구의 10% 미만에 불과한 백인들은 이러한 억압적 국가기구를 토대로 인종차별체제의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

1) 국가안전부(NSMS)의 목적

남아공의 국가안전부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적에게 공포심을 확산시키며, 경제적 부를 획득하고 동시에 특정의 신조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억압적 국가기구였다. 위협 요소의 제거라는 '방어적 동기'와 공포심의 유발이라는 '공격적 동기'는 국가안전부를 통해 현실화 되었다. 그 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반대세력들은 국가에 대항하는 혁명적 공격자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제도권 밖에서 급진적인 정치·경제적 변혁을 도모하는 모든 노동자 대중조직을 짓밟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탄압의 대상에 흑인대중들의 조직을 근거로 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적 저항을 하는 세력을 포함시킨다.
- ③ 흑인지역의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흑인과 백인 모두가 발전할 수 있다는 "당근과 채찍(hearts and minds)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 ④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저항세력들의 반란이 발생되기 이전에 잠복된 문제들을 분석하여 규명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군사적인 물리력의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이다.¹⁾

2) 국가안전부(NSMS)의 운영

ANC의 간부인 라마(Comrade Ramat)는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국가안전부

1) Joy Harnden, "The Creeping Coup", Sash [요하네스버그] 30, (1987. 5) : 3.

(NSMS)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흑인을 폭력적으로 탄압함으로써, 백인통치의 토대를 강고하게 구축했던 합동관리센터의 요원들은 우익세력들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국가기구를 총체적으로 활용하였다. 정보위원회는 경찰·군인·국가 정보공무원들의 정보, 그리고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군대 정보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취급하였다.”²⁾

그래서 국가안전부는 국가안보위원회의(내각의 아주 중요한 위원회는 군 정보기관의 전임 우두머리가 주도한다.)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지방정부의 군사령관이 참여하고 있는 12개 지역 합동관리센터(JMCs)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개 지역 합동관리센터(JMCs)마다 대략 60개의 JMCs지부들을 보유하고 있다. 각 지부조직들은 대도시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공무원, 지역군인, 그리고 경찰관료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관료들로 구성된 448개의 소JMCs가 존재한다.³⁾

이렇게 운영된 국가안전부(NSMS)의 인원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ANC요원들에 비해 약 200배 이상이었다. 1980년 중반, ANC는 정예부대라 할 수 있는 10,000여 명의 게릴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중 약 400여 명이 국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였다.⁴⁾ 하지만 남아공의 보안군(保安軍)은 중앙정부의 경찰이나 지역정부의 경찰·군을 제외하고도 82,400여 명에 달하였다.

2.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1950년 5월 1일, 남아공공산당(SACP)과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전국적 총파업투쟁을 선포하고 주도하였다.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 총파업투쟁에서, 백인 지배계급은 이른바 ‘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 하에 총을 발사하였다. 그 결과 비트바터스랜드(Witwatersrand) 공업지역의 흑인 노동자들 18명이 사망했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다. 1958년에도 국가안전부와 경찰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흑인광부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1950년 대 후반에 흑인노동조합회의(SACTU) 산하 조합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정치적 대중파업을 확산시켜 나가자, 백인 국가는 모든 종류의 작업정지에 대해서 강경한 억압정

2) Comrade Ramat, [pesud] “프리티리아의 안전체계: 전국을 가로질러 확산된 조직망;” Sechaba, 1987. 1, 29.

3) Joy Harnden, Ibid, 4.

4) Tom Lodge, “망명정부: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카민족회의”, 제3세계 계간지 9(1987. 1): 5.

책을 전개했다. 레비(Levy)는 이 기간동안에 전개된 흑인 노동조합의 파업을 “소규모 내전과 유사하다”고 묘사하였다. 파업투쟁에 참여하는 흑인 노동자들은 “경찰봉, 경기관총, 최루가스 용기로 무장한 경찰들을 잔뜩 실은 트럭”과 대치하고 있다가 “큰 트럭이 도착하면 모두 체포되었다”(Levy, 1960, P.39)

흑인 노동자들은 1967년 SACTU의 해외추방으로 백인들에 대한 대중적 투쟁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지만, 1972년~1973년 파업투쟁을 계기로 흑인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법적 형식으로는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인 자본가들이 흑인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하였던 것이다.

흑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판매노동자연합(1972년 6월)의 결성과 요하네스버그 버스노동자들의 총파업(1972년 6월)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강력하고 통일된 노조의 결성’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이 외에도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흑인노조의 인정’을 요구하는 부두노동자들의 파업투쟁(1972년 10월), 더반(Durban) 지역 자동차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시작된 1973년 전국 총파업 투쟁, 광산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1973년~1974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남아공의 백인정권은 노동자들의 이러한 저항에 대해 폭력적인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Hornor and Kooy는 1972년부터 1976년 6월 사이에 178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10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백인 지배계급의 흑인 탄압은 1983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흑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COSATU) 건설투쟁과 통일민주전선(UDF)의 반정부투쟁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통일민주전선(UDF)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3원의회제 반대투쟁과 노동조합(COSATU) 건설투쟁’에서 1983년 한 해 동안 560,334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1984년에는 1,300여 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다.

3. 정치적 대중봉기에 대한 탄압

남아공 흑인들의 대표적인 대중봉기는 1960년의 샤프빌(Sharpeville) 투쟁, 1976년의 소웨토(Soweto) 투쟁, 통일민주전선(UDF)가 주도한 1983년의 ‘3원의회 반대투쟁’, 그리고 1986년 이후의 대중민주주의운동(MDM) 등이었다. 백인 지배계급은 흑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탄압했던 것처럼, 이러한 투쟁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1960년 요하네스버그의 남쪽지역인 샤프빌에서 통행법(Pass Law)⁵⁾에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이 발생하였다. 샤프빌 투쟁은 흑인들의 비폭력 캠페인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 투쟁으로 67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리고 1976년 흑인거주지구인 소웨토에서 “반투교육법안⁶⁾”에 반대하는 학생과 흑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8개월 동안 전개되었는데, 이 투쟁에서도 역시 575명의 흑인이 사망하고, 4,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흑인들의 정치적 대중봉기는 ‘3원의회 반대투쟁’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백인정권은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였다. 통일민주전선(UDF) 전국집행위원 중의 하나인 음뉴엘(Trevor Manuel)은 UDF에 대한 국가탄압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설립 후 2년 1개월이 지난 후, 국가의 맹공격에 맞서고 있는 UDF와 자신들을 발견했다. 전국집행위원이나 지역 집행위원들 중 3분의 2가 사망, 구금, 혹은 구속으로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다. 최소한 2,000여 명의 UDF 조직원이 구속·구금당했다.”

1983년~1984년에 흑인들의 정치적 대중봉기가 활성화되자, 백인 정권은 1985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인종해방과 계급해방을 추구하는 주체들에 대해 무장학살을 감행하였다. 1984년 10월, 7천명으로 구성된 남아공 방위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세보갱(Sebokeng) 집단거주지역에 난입하여 무기와 수상한 자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수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칼로 투쟁하는 흑인들을 진압했다.⁷⁾ 샤프빌과 템비사(Tembisa)를 포함한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1985년 2월 동케이프의 백인 도시인 위텐하게(Uitenhage) 근처의 흑인 집단거주지구(township)인 랑가(Langa)에서, 흑인들이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에서도 역시 많은 흑인들이 경찰의 총앞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흑인들은 1985년 3월 21일에 장례식을 거행하였는데, 경찰은 장례행렬에 참여한 흑인들에게 발포하여 21명 이상을

5) 1952년에 개정된 통행법의 핵심내용은 ‘15세 이상의 모든 흑인들은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만 하고, 원주민 보호구의 반투 흑인 노동자들은 계절노동자로서 고용계약을 맺었을 때에만 도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6) 원주민인 반투 흑인들에게 종족·부족언어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교육제도를 법제화한 법안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전체 흑인 가운데 약 1/5 이상이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7) 미셸 모리스, 남아프리카의 정치적 폭력과 사보타지, 1984. 1.1~1985.6.30 (케이프타운 : 테러리즘연구센터, 1982), p. 28.

사살하였다.

1985년 4월 말에는 알렉산드라 흑인 집단거주지구(township)에서 ‘군대주둔에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백인테러(balaclavaclad men) 그룹(흑인들은 이 그룹을 정년 퇴임한 경찰관들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은 8명의 흑인 정치활동가를 죽이고, 20여 개의 주택에 소이탄(화염방사기)을 투척하는 등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알렉산드라에서 발생하였던 폭력적 탄압은 남아공의 여러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1984년 9월과 1987년 11월 사이에 2,600명 이상이 아파트하이드 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죽었다.⁸⁾ 남아공 인종관계 연구소는 “1984년 9월부터 1986년 1월 사이에 죽은 사람의 2/3 정도를 남아공 지방 정부가 죽였고, 나머지는 흑인들간의 폭력적 대결로 죽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1986년 1월까지 총 3,658명의 부상자들 중 2,229명의 사람들이 지방정부의 폭력적 억압으로 부상당했다는 것이다.

흑인들에 대한 이러한 폭력은 국외에서도 감행되었다.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및 남아공공산당(SACP) 간부들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 프로젝트였다. 1987년 1월과 7월 사이에 7명의 ANC 간부들이 스와질랜드(Swaziland)에서 살해되었다.⁹⁾ ANC집행간부로서 희생자들 중 가장 어렸던 메이크(Cassius Make)는 ‘민족의 창(MK)’이라는 무장단체 사령관 4명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음바바네(Mbabane) 외곽지역에서 3인의 백인들이 쏜 총을 맞고 승용차 안에서 죽었다.¹⁰⁾

8) “남아프리카 흑인 시민전쟁에 관하여”, The Economist, 1987, 11. 7. 45.
9) Business Day, 1987. 7. 17.
10) “ANC 암살운동”, New African, 1987. 9. 15.

남아공의 대표적인 인종차별법과 국제적 압력

김영수(전문위원/보고서팀)

1. 주요 인종차별법

남아공의 국민당(National Party) 정권은 1948년 이후 약 33개의 차별법과 차별제도를 만들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흑인들에게는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러한 법과 제도들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탄압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학살의 정당성이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흑인들이 자연발생적인 봉기나 조직적인 변혁투쟁을 전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반(反)아파르트라이드 운동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기제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 1>와 같다.

<표 1> 주요 인종차별법

주제 연도	법	핵심 내용
1913	토지법	흑인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 흑인 농민들은 백인 농장의 농업 노동자로서 생존을 유지하게 만든 법.
1924	산업조정법	노조와 고용주조직의 등록을 규정.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 흑인노동자는 피고용자의 범주에서 제외. 파업의 금지.
1925	임금법	산업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정부의 임금국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제한된 수준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할 도모. 역시 흑인노동자는 피고용자의 범주에서 제외.
1944	직업훈련법	흑인들은 전문적인 직업이나 숙련직에 종사할 수 없고, 단지 백인 가정에 고용될 경우에 필요한 직업을 훈련시킬.
1949	혼합결혼금지법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금지시킴. 특히 백인과 타인종 간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킴.
1950	집단지거 지역법	인종별로 구분된 거주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여야 함. 단 흑인들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백인거주지역을 낮 시간만 출입 허용.
1951	원주민 건축노동자법	흑인은 백인도시지역에서 숙련건축공으로 일할 수 없고, 단지 흑인을 위한 공사에서만 숙련 건축공으로 일할 수 있음.
1951	반투통치기구법	흑인지역을 부족통치기구, 지방통치기구, 지역통치기구 등으로 분리시켜 중앙행정의 용이함과 아울러 흑인 자치화를 추진.
1952	통행법(개정)	15세 이상의 모든 흑인들은 신분증을 항상 휴대해야 함. 원주민 보호구역의 반투 흑인노동자들은 계절노동자로서의 고용계약을 맺었을 때에만 도시로 나올 있게 함.
1953	원주민노동쟁의법	흑인은 피고용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국의 백인관리를 통해서만 임금협상 가능.
1956	산업조정법의 개정	특종직종에 특정인종만 채용토록 함. 특종직종의 특정인종을 다른 인종으로 대체 금지. 특종직종의 특정인종에 대한 고용범위를 설정하는 권한.
1959	반투자치촉진법	흑인과 백인 완전한 분리를 추구. 흑인 자치정부가 만들어지게 됨.
1971	반투홈랜드법	자치정부들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프레토리아(pretoria) 정부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독립정부 구성. 독립된 홈랜드(homeland)는 자체적으로 헌법을 보유할 수 있게 됨.
1976	반투교육법	'부족언어, 종족언어'의 사용 금지. '영어'만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교육제도의 도입. 인종차별적인 다양한 교육제도의 도입.
1979	개정된 산업조정법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흑인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전국적인 흑인노조의 결성을 인정. 단체교섭권 인정. 그러나 파업권은 불인정.

1948년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러한 인종차별법들은 국민당(National Party) 정권의 인종차별주의를 공식화하는 수단이었으며, 흑인들을 착취하여 백인의 경제적 부를 강화시키는 수단이었다.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적 착취제도가 공식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흑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기제(mechanism)였다. 통행법(pass law)에 반대했던 1960년의 샤프빌 봉기, 반투교육법에 반대했던 1976년의 소웨토 봉기, 인종차별적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했던 흑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투쟁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 남아공에 대한 국제적 압력

국제적인 압력조치들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체제를 폐지시키는 주요 동력 중의 하나였다. 특히 1976년 미국에서 발표된 설리반(Sullivan)원칙은 흑인들에 백인들의 차별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표 2> 남아공에 대한 국제압력조치

년도	주제 및 조치내용
1963	UN의 경제 제재조치
1970	올림픽 출전 금지조치
1974	UN축출조치
1977	미국의 인권압력조치 (1976년의 설리반(Sullivan)원칙을 토대로)

이러한 압력조치들은 1960년에 남아공이 영국연방에서 독립하고, 샤프빌(sharpeville) 학살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인들은 1960년 통행법(pass law)에 반대하는 샤프빌 지역의 흑인들에게 발포하였다. 흑인 67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총상을 당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남아공공산당(SACP)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남아공 백인들 내부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백인 중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남아공 압력조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군사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미국의 압력조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한다. '1976년 이전에 남아공에서 아주 많은 양의 "핵 우라늄"을 미국으로 옮기고 난 이후, 남아공의 경제적·군사적 가치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1976년에 발표된 설리반(Sullivan)원칙은 미국의 대 남아공 정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업복지에 있어서 흑백인종간의 차별을 금지 : 인종별로 차별화된 노동 조건의 폐지,
- ② 모든 피고용인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 : 인종별 차별임금제도의 폐지,
- ③ 인종별 직종제한(colored bar) 제도의 폐지 : 인종별로 정해진 직종제도의 폐지,
- ④ 흑인들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의 추진 : 전문직종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⑤ 흑인들의 승진기회의 부여,
- ⑥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 : 인종별로 차별화된 임금착취제도의 폐지,
- ⑦ 흑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여건의 개선 : 전기, 수도, 공공의료 등의 열악한 조건의 개선 등.

설리반(Sullivan)원칙은 인종차별정책으로 착취당했던 흑인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생활조건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원칙의 공표로 1976년 이전까지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지지를 받았던 백인들은 인종착취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적으로 ANC를 남아공의 임시정부로 묵인·인정하는 계기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남아공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백인 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조치에 상응하여 ANC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강화되었다. 특히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남아공 공산당의 핵심 간부인 슬로보(Joe Slovo)는 ANC에 대한 소련의 재정지원을 공표하였다. "ANC가 1년에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의 규모는 약 8백만 달러에서 2천 5백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정도의 원조금액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방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수준과 비슷했다." ANC의 무장단체인 '민족의 창(Umkhonto:MK)'의 1년 예산이 5천만 달러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ANC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지원의 액수는 슬로보(Joe Slovo)가 공표한 사실보다 많았을 것이다. 이 외에도 ANC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와 지원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중국, 베트남, 그리고 남아공 주변국가들은 ANC와 SACP의 투쟁본부를 보호하거나 '민족의 창'(MK)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ANC의 무장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군사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제적 압력조치들이 남아공 내 흑인들의 투쟁과 그러한 투쟁에 대한 백인들의 학살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아공의 인종적 자본주의 체제는 흑백간의 인종적 대결과 계급적 대결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위기상황을 맞이했었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었다. 경우에 따라서 백인 국가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고 흑인들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따라서 인종차별주의 정책의 폐지는 기본적으로 흑인들의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제적 차원의 압력 조치들이 부차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인종해방운동 주체들의 정치적 동맹

-이행기 민주동맹(1990.4~1996년)을 중심으로-

김영수(전문위원/보고서팀)

1. 서론

3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인종우월주의 독재국가권력이 변화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파르타이드 폐지정책은 1993년 12월 22일 백인의회가 과도기 임시헌법을 비준함으로써 약 3년 간에 걸친 ANC와 백인정권간의 협상투쟁이 끝을 맺었다. 이어서 전개된 1994년 4월 총선투쟁에서 1948년 이후 반아파르타이드 운동의 정치적 구심체 역할을 담당했던 3자동맹의 주체, 즉 ANC/SACP/COSATU 후보들이 승리¹⁾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남아공의 반아파르타이드 운동의 주체들은 정치권력을 획득하는데에는 성공하였다. 향후 남아공의 ANC권력이 국가해체투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권력을 수립할지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를 새로운 형태로 구조화시킬지, 아니면 남아공 우익세력의 반격으로 권력을 상실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해답의 열쇠는 ANC 정권의 정치적 동맹체인 삼자동맹(Triple Alliance)이 어떠한 사회변혁투쟁을 지속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들 삼자동맹(Triple Alliance)의 주체들은 남아공의 인종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반아파르타이드운동을 전개하였다. 모든 투쟁사건들을 열거하기 힘들지만, 대표적인 투쟁으로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전에는 1957 ~1958년 흑인노동조합회의(South African Congress of Trade Union:SACTU) 지도 하에 전개된 노동자 총파업투쟁, 1960년 샤프빌봉기, 1961년 '민족의 창'(이하 MK) 건설, 그리고 1976년 소웨토봉기 등이다. 또한 1980년대에는

1)94년 4월 총선에서 ANC는 62.5%, 백인정권의 지배정당이었던 국민당은 20%, 크와줄루-나탈주의 줄루족을 대표하는 잉카타자유당이 10.5%의 지지를 획득하였다.경향신문, 94년 5월 10일 자.

1983년 통일민주전선(United Democratic Front: UDF)과 민족전선(National Front:NF)의 건설과 3원의회(Tri-Cameral Parliament) 반대투쟁, 1986년 인민전쟁의 선포와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건설, 1988년 노동관계법 개정 투쟁, 1990년 이후 아파르타이드 정책의 종식과 협상투쟁, 그리고 1994년의 선거투쟁 등이다.

남아공 변혁운동세력들은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자발적인 대중봉기, 조직적인 대중파업, 전위적인 무장봉기, 이행기 협상투쟁, 그리고 통일된 선거투쟁 등 사회변혁론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투쟁전략과 전술을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혁운동의 주체들은 정치적 동맹을 추구해왔다. 동맹의 형태가 회의동맹(Congress Alliance), 삼각동맹(Triple Alliance), 대중동맹, 그리고 삼자동맹(Tripartite Alliance)이다.

2. 국가의 탄압정책과 동맹관계의 변화

194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아공의 정치적 분수령이 되었던 국가의 탄압정책과 이에 대한 정치운동진영과 노조운동진영의 투쟁내용과 조직적 변화과정을 각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당 정권 이후 현재까지 4시기²⁾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국가의 탄압정책과 변혁운동의 대응

	1948 - 1960	1961 - 1982	1983 - 1990.3	1990.4 - 1996 현재
국가 정책	① 51년 공산주의 탄압법제정 ② SACTU탄압 ③ 샤프빌학살	① ANC축출 ② SACTU축출 ③ 소웨토학살 ④ 비하존정책 (흑인노조 최초인정)	① 3원의회구성 (Tricameral Parliament) ② 국가비상사태선포 ③ 흑인교외지구 무력침탈 ④ 반아파르타이드 폐지정책	① 정치범 석방을 시작으로 아파르타이드 폐지 ② ANC와 백인정권 협상 ③ 남아공총선 ④ 만델라정권 수립
정치 운동	① 공산당의 지하투쟁 ② ANC의 민중회의 주도 ③ 자유현장체택	① 샤프빌봉기 ② MK 건설 ③ 무장계릴라투쟁 ④ 소웨토봉기	① UDF, NF건설 ② 선거보이콧운동 ③ 인민전쟁투쟁 ④ 무장공격 강화투쟁	① 협상투쟁 ② MK해소 ③ 총선투쟁 ④ 만델라정권수립 (RDP정책수립과 집행)

2)남아공 변혁운동의 역사를 4시기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역사에 대한 필자의 재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특정국가에 대한 검토분석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